

정부합동대책반 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2016년 2월 12일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: 현장기업지원반

총괄팀장 강경성 팀장(02-2100-4810), 김건혁 사무관(02-2100-4811)

금융팀장 손병두 국장(02-2156-9804), 이종림 사무관(02-2156-9752)

기업전담지원팀장 김병근 국장(042-481-4550), 양승욱 사무관(042-481-4541)

정부,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 확정·시행 - 관계부처로 구성된 「현장기업지원반」도 가동 시작 -

□ 정부는 2.12일(금) 10시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.11일 개최된 「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」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음

- 일시/장소: 2016.2.12.(금) 10:00~, 정부서울청사
- 참석자: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(주재), 기재부, 통일부, 행자부, 고용부, 국토부, 금융위, 중기청 담당과장
- 주요 논의 안건
 -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부처별 우선지원 대책
 - ② 「현장기업지원반」 구성·운영 계획

□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함과 동시에,

-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「현장기업지원반」(반장: 산업부 기조실장)을 가동하였음

-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들은 “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”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써, 「현장기업지원반」은
 -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 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
 -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,
 -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음
 -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·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으며
 -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,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, 대출상환 유예,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 -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, 징수 유예,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하였음
 -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,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,
 -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,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였음
 -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,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임

-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현장기업지원반」을 2.12일(금)부터 가동하였음(정부서울청사 202호)
 - 「현장기업지원반」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, 금융위,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,
 -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,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,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임
- 특히 「현장기업지원반」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(중기청 총괄)을 설치·운영하면서,
 -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:1 핫라인을 구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임
 -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10개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, 금융위, 행자부, 지자체,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하여 123개 입주기업별로 1: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고,
 -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, 6인이 1팀이 되어 전담 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됨
 -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·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임

참고 1

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

<<요약표>>

분류	주요 대책	세부 지원내용	소관부처
정책 자금 지원	①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경험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* 투자손실액의 90%, 기업당 70억원 내 	통일부
	②기업대출 상환 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, 중진공, 산·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유예 	금융위 중기청
	③신보, 기보의 보증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(1년 원칙, 연장 가능)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(0.5%) 	
	④금융수수료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	
	⑤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,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	
세제, 공과금 지원	⑥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세(3월), 부가가치세(4월)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연장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	기재부
	⑦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	행자부
	⑧공과금 납부 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요금 납부 유예 	산업부
정부 조달	⑨납기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	조달청
	⑩납품보류시 제재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	
	⑪단가계약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	
고용안정	⑫근로자 고용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업,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	고용부
	⑬사회보험료 납부연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	
	⑭임금체불 관련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응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	

① 정부정책 자금 등 지원

① 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(통일부)

-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
-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(110개)에 보상금 지급절차 착수(총 2,850억원)
* 투자손실액의 90%, 기업당 70억원 이내

②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회사, 중진공, 산·기은 등 정책금융 기관 대출 등에 대해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(금융위, 중기청)

-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
 - 대기업,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 유예 및 여타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
-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(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)하고, 민간 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협조 요청

③ 신·기보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 연장(금융위)

-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, 보증 연장시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 적용(0.5%)

④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금융 이용시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(금융위)

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(금융위)

- 경협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 기존 여신에 추가하여 여신을 공급하고, 금리는 우대

- 2.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(업체당 최고 5억원, 금리 1%p 우대)하고, 수은(남북협력기금),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후 시행
- * 기업은행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문의처: 기업은행 영업점, 금감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(대표번호 ☎3145-8606) 등
-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

② 세제 및 공과금 지원

- ⑥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관련 지원(기재부)
 - 법인세,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 및 기고지세금 징수유예(최대 9개월),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(최대 1년)
- ⑦ 입주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(행자부)
 -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,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
- ⑧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(산업부)

③ 정부조달 관련 지원 (조달청)

- ⑨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, 지체상금 등 각종 불이익 면제
- ⑩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

- ⑪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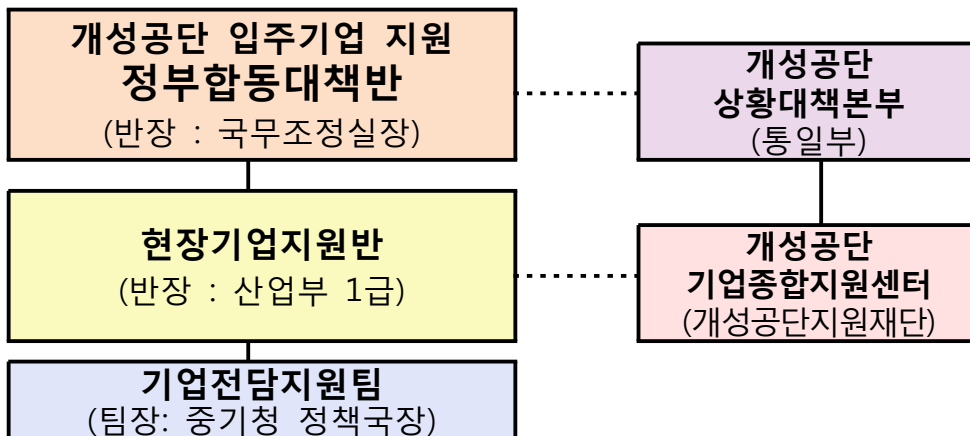
④ 입주업체의 고용 관련 지원(고용부)

- ⑫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,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(1일 4.3만원 한도, 최대 180일)
- ⑬ 고용·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- ⑭ 입주기업에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용자제도(1인당 6백만원)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용자 지원

참고 2

개성공단 입주기업 「현장지원기업반」 구성 및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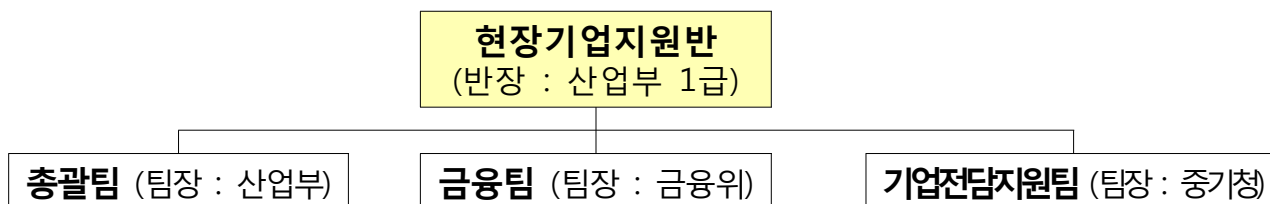
1. 입주기업 지원체계



2. 현장기업지원반 구성운영계획

□ 구성 및 역할

- 산업부 1급을 반장으로 기재부·고용부·금융위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하고,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



□ 팀별 기능

- **총괄팀** : 입주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총괄(산업부, 국조실, 기재부, 통일부, 행자부, 고용부, 국토부, 중기청 등)
- **금융팀** : 입주기업 금융 현안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(금융위, 금감원, 수은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 등)
- **기업전담지원팀** : 고용센터·지자체·정책금융기관 등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여 기업별 1:1 맞춤형 현장 지원(중기청, 고용부, 행자부, 지자체, 개성공단관리위 등)

참고 3

개성공단 입주기업 「기업전담지원팀」 구성 및 운영계획

□ 구성방안

- 중소기업정책국장 (중기청)을 팀장으로 하여, “기업전담지원팀” 구성·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,
 - 10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·금융위·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, 123개 입주기업별 1:1 맞춤형 지원팀 구성
- 4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4인이 1팀이 되어,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‘점점 역할’ 수행

<「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팀」 체계도 >



□ 운영계획

- **(모니터링)** 최초 면담은 4인 전담팀의 입주업체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, 전화조사(毎日)와 병행하여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실시
- **(후속조치)** 업체 건의사항은 ‘즉시과제’와 ‘협업과제’로 구분하여, 입주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애로해결 추진

즉시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팀 참여기관 (중기청·고용부·금융위·지자체)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애로 해소
협업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기업지원반에 참여하는 부처 (기재부·산업부·문화부·국토부 등)의 심층적 검토 및 협업을 통해 애로 해결